

제 1031 호

1984. 7.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공보관 조광호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 시보

차 례

◎ 조 례

제 1902 호 :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 3

◎ 훈 령

제 612 호 :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중개정규정 ..... 3  
제 613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협의회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 ..... 5  
제 614 호 :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운영규정 ..... 5  
제 615 호 : 서울특별시소방항공대운영규정개정규정 ..... 10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997

◎ 고 시

제 440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21  
제 441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 미관 및 보존지구 )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 24  
제 442 호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 ) 시행변경허가 ( 순공기한연기 ) ..... 25  
제 443 호 : 도시계획시설 ( 지하도로, 고속철도 )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25  
제 444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 26  
제 445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 27  
제 446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변경시행허가 ..... 28  
제 447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조서 ..... 29  
제 448 호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지적승인 ..... 30  
제 449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30  
제 450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 33

◎ 공 고

제 45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6  
제 458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9  
제 459 호 : 무교구역제 8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 40  
제 460 호 : 다동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 40  
제 461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완료공고 ..... 41  
제 463 호 :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 42  
제 465 호 : 도시계획사업 ( 고속철도부대시설 ) 실시계획공람공고 ..... 42  
제 466 호 : 건설업 ( 전문공사업 ) 면허취소공고 ..... 43

◎ 구청공고

성북구공고제 241 호 : 축척변경사업확정공고 ..... 44  
성동구공고제 243 호 : 축척변경사업의 확정공고 ..... 44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대리 부시장 이상연(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02 호**

서울특별시 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 일반회계중 고용직정원 “2,182”를 “1,889”로 정원 내용란 중 감시원 “550”을 “257”로 하고 합계 정원란 “8,020”을 “7,72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기운영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4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

대리 부시장 이상연(인)

**훈 경**

**◎서울특별시훈경제 612 호**

서울특별시 중기운영 관리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중기운영 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중 “전조”를 “제 3 조”로 하고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사용허가) 중기보유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유 중기를 다른기관(각국, 구 및 사업소등 시산하기관, 이하 같다)이나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중 “전조”를 “제 5 조”로, “3 일전 까지”를 “1 일전까지로”하고 “시장”을 “중기보유 사업소장”으로 하며 제 7 조를 삭제한다.

제 8 조 제 2 항중 “전항”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10 조중 “제 4 조 서식”을 “제 2 호 서식”으로 한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조(작업장순찰) 중기보유 사업소장은 중기작업장을 매주 2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 중기 가동실태 파악과 부정운행을 예방, 단속하여야 한다.

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조(정비 및 점검) 중기보유 사업소장은 중기의 구조와 성능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정비: 조종원이 작업시행 전 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비담당제원이 확인 점검한다.
2. 주간정비: 조종원과 정비원이 주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비담당제장이 확인 점검한다.
3. 월간정비: 정비사가 월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소장이 확인 점검한다.

제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조(종사원의 교육실시) 중기보유 사업소장은 중기종사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기관리 이론과 정비 및 수리 기술교육
2. 봉사자세에 대한 정신교육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 16조중 "제 11호 서식"을 "제 6호 서식"으로 하고, 제 17조중 "제 12호서식"을 제 7호서식"으로 하며, 제 18조중 "제 13호서식"을 제 8호서식으로 한다.

제 19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업소장은 제 1항의 보고로 즉시 사고경위를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제 21조, 제 22조 및 제 24조를 삭제하고, 제 23조를 제 20조로 제 25조를 제 21조로하며 제 20조중 제 16호서식을 제 9호서식으로 하고 제 21조중 제 17호서식을 제 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 4호, 제 7호내지 제 9호와 제 11호내지 제 13호 및 제 16호를 각각 제 2호내지 제 9호로 하며 제 2호, 제 3호, 제 5호, 제 6호, 제 10호, 제 14호, 제 15호, 제 1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  
령한다.

1984. 8. 2.

서울특별시장

대리 부시장 이상연 ㉠

◎서울특별시훈령제 61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설치운영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설  
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외자도입심의회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4. 8. 2.

서울특별시장

대리 부시장 이상연 ㉠

◎서울특별시훈령제 614호

서울특별시 외자도입심의회  
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자도입심의회규칙 ( 이하 " 심의회 " 및 " 규칙 " 이라 한다 )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심의회 개최 ) 심의회는 심의 요청이 있을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 3 조 ( 심의요청 ) ① 외자도입 심의 요청을 하고자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서류를 심의회개최 1월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자도입 심의신청서 ( 별지 제 1 호서식 )
2. 사업계획서
3. 기타 관계서류

② 차관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심의회개최 1월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계약 심의신청서 ( 별지 제 2 호서식 )
2. 사업계획서
3. 차관계약서 또는 변경서의 초안과 주요내용
4. 기타 관계서류

③ 외자구매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은 외화사용계획서 ( 별지 제 3 호서식 ) 를 사업개시년도 2월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 심의절차 ) ① 제 2 조 제 1 항 및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심의회신청을 접수한 위원장은 소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의 타당성, 차관계약 내용의 적정성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예비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타당성있는 안건은 심의회를 소집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의록작성)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심의록 (별지제 4호서식)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 1호서식)

외 자 도 입 신 청 서

차관도입주관부서								
차관사업명								
차관사업의목적								
차관의종류								
차관선 (대주)	상 호				업 종			
	대 표 자							
	주 소				국 적			
차 관 내 용	차관금액							
	차관조건	착수금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	년	%	수수료			
		기 타						
		도입외자의 내용및금액	계	시설재	원자재	현 금	용 역	기 타
		물자공급자						
차 입 방 법					차입시기			
기 타								

(제 2호서식)		<u>차관계약심의신청서</u>					
차관도입기간							
차관사업명							
차관사업의목적							
차관 선 (대주)	상 호				업 종		
	대 표 자				설 립 년월일	19    년    월    일	
	주 소				국 적		
	자 본 금						
차 관 내 용	차관금액						
	차 관 조 건	착수금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 자 율	년            %		수 수 료			
	기    타						
	도입 외 자 의	계	사 실 채	원 자 채	현    금	용    역	기    타
내 용 및 금 액							
물자공급자							
대외지급공급기관					대외지급 보증기타		
기    타							

(제 3 호서식) ( ) 년도 외화사증계획서 부서명 : (단위 : 천 \$)				
항 목	세 합	전년도실적	( )년도계획 원 화에산액 불 화 (백 만 원)	산 출 근 거
무 역	일 반 용 자 재			품목별, 단가, 수량, 규격, 용도표시
무 역 의	이 자 (차관) 의 비 잡 용 역 부 담 금 수 수 료 관 공 비 정 보 비			
자 본 거 래	원 금 (차관)			
합 계				

(제 4 호 서 식)

서울특별시 외 자도입심의위원회 의사록

- 1. 일시 및 장소
- 2. 참석 위원
- 3. 안 건
- 4. 심의 및 의결사항

위와 같이 외 자도입 안전을 심의 의결함.

19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인)  
 (인)  
 (인)  
 (인)  
 (인)  
 (인)

5. 작성자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4. 8. 2

서울특별시장

대리 부시장 이상연(인)

◎서울특별시훈령제 615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영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항공대 ( 이하 " 항공대 " 라 한다 ) 의 안정운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항공대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전부서에 적용하며 항공기운항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 임무 ) ① 항공대는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2. 제한된 화재 진압
3. 공중소방지휘 및 통제
4. 소방요원의 공중수송

5. 능력범위내에서 소방장비 공중수송
6. 공중조명
7. 대피유도 및 공중방송
8. 소방훈련
9. 의료지원

② 항공대는 시정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1.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2. 계몽, 선전, 보도를 위한 공중방송 및 전단살포
3. 대집회시 군중의 질서유지 및 통제
4. 귀빈공수 및 연락비행
5. 서울특별시 항공대 설치조례 ( 이하 " 조례 " 라 한다 ) 제 3 조 제 2 호 내지 제 8 호에서 규정한 업무
6.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

제 4 조 ( 항공기의 운항승인 ) ①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등 긴급을 요하는 운항일 때는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운항할 수 있다.

②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방본부 방호과장, 지령실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을 지시한 자는 즉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 비행 및 기술유지를 위한 훈련비행은 항공대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④ 제 3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목적으로는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운항의 우선순위) ①항공기의 운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2.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3. 시민복지와 편익을 위한 지원
4. 소방훈련 및 기타훈련
5. 기타 행정지원

② 제한된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대의 항공기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적어도 갖추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조 (항공통제관등) ①항공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한다)은 소방본부 방호과장으로 하며 항공대 운영에 관한 다음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요청서의 접수처리
2. 항공기지원소요 및 우선순위결정
3. 비행임무 지시서 발급

(별지제 1호)

② 항공대장(이하 "대장"이라한다)은 항공운영에 관한 기술지도 및 비행임무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임무의 타당성 및 행가능력을 고려한 비행방법 결정
2. 임무조종사지명 및 항공기지정
3. 조종사에게 임무지시 및 세부 비행계획서 작성확인
4. 항공기 운항안전에 대한 감독
5. 대원의 비행훈련 및 정비 등 기술교육 실시
6. 항공기 정비관리 감독
7. 해당 유관기관과 협조 및 통보확인

제 7조 (자격요건) 항공기 조정사 및 정비사는 항공법이 정하는 국가기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 8조 (항공기의 운항신청등) ①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부서는 항공기의 능력, 비행안전여건등을 대장과 사전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통제관이 검토한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장에게 비행임무를 지시한다. 다만,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내의 비행은 군통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항공기 및 선택장비의 준비와 운항통제 기관과의 협조 및 비행

인가등 원활한 항공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구조 임무를 제외한 수도권 비행금지 공역내의 비행은 적어도 7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임무 : 최단시간내
2. 연간 사업계획 업무 : 1개월전
3. 각종훈련 및 행사지원 : 1주일전
4. 긴급행사 및 귀빈탑승 : 24시간전
5. 일반행정지원 : 48시간전

④ 항공기 탑승인원은 (임무) 운항 1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될 요하는 물자 및 기타화물은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 9조 (항공기의 운항수칙등) ① 조종사는 표준절차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상호간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20미터이상의 안전거리 유지
2. 당해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3. 항공공시보 및 비행통제 공역 (금지 및 위험공역)의 숙지이행
4. 승인되지 않은 특수 및 곡예비행금지
5. 비행중 돌발적인 기상과 만났을때 항로를 변경하거나 가까운 착륙장에 안전대피
6. 비행고도는 부여된 임무수행상 요구되지 않는한 최저 500 피트

최고 10,000피트 이상의 비행금지  
7. 항공기는 이착륙간 및 비행중에 항공관계기관 및 통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이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시는 경계 및 맹목통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전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무숙지 및 비행전 점검표에 의한 확인점검 실시
2. 세부비행계획의 작성. 다만, 긴급임무시는 예외
3. 항공공시 및 기상정보과악과 해당관제소에 비행계획서 제출
4. 해당통제기관 및 소방본부 지령실에 비행예정사항 통보
5. 정비사에 의한 비행전 점검표 확인 및 비행점검 실시

③ 조종사는 비행중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비행장 관제권을 이탈할때 해당관제탑에 통보
2. 비상주파수의 수신
3. 소방본부 지령실 및 당해 항공관제 기관에 위치통보
4. 비행장 관제권 통과시 당해 관제탑의 승인
5.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 소방본부 지령실 및 당해 항공관제 기관에의 통보
6. 비행 계획상 승인되지 않은 지점에서 착륙금지

<p>④ 조종사는 비행후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기 점검실시 및 비행중 발생한 항공기의 결함등을 비행일지에 기록한후 정비반에 통보</li> <li>2. 당해 통제기관에 착륙통보</li> <li>3. 비행중 위험한 비행조건이나 기상상태등 비행후 결과보고서 작성</li> </ol>	<p>전에 다음과 같은 기상조건이나 또는 이와같은 기상조건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종사 판단에 의하여 비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행조건</li> </ol>						
<p>⑤ 해상비행은 연안 5킬로미터 이내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주간에 한하여 다음사항이 구비되어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용 주부식 스키드</li> <li>2. 구명동의 (탑승원수)</li> <li>3. 1인 3식분의 비상식량</li> <li>4. 방수용 신호등 및 휴대용 전등</li> <li>5. 해상구조 기관과 통신유지</li> </ol>	<table border="1"> <tr> <th data-bbox="798 694 981 750">풍 속</th> <th data-bbox="981 694 1157 750">운 고</th> <th data-bbox="1157 694 1348 750">시 정</th> </tr> <tr> <td data-bbox="798 750 981 840">30노트이하</td> <td data-bbox="981 750 1157 840">500피트이하</td> <td data-bbox="1157 750 1348 840">1,500미터이하</td> </tr> </table>	풍 속	운 고	시 정	30노트이하	500피트이하	1,500미터이하
풍 속	운 고	시 정					
30노트이하	500피트이하	1,500미터이하					
<p>⑥ 야간 항공소방활동은 시계제한 및 주의장애물 등으로 극히 제한되거나 조명하에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기도할 수 있다.</p> <p>⑦ 항공기가 불시착할 경우 조종사는 최근 관할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존을 위한 경비 및 보안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하고 지체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위 각항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대장이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기상경보 각종 기상경보 (태풍, 강풍, 강우, 강설, 악시정, 교란기류)가 당해 지역내에 발령될 때</li> <li>3. 결빙 한파로 인하여 동체 및 회전날개에 빙착이 예상될 때</li> </ol>						
<p>제 10 조 (기상제한) ①시계 (視界) 비행 방식하에서는 비행전 또는 비행완료</p>	<p>② 조종사는 출발지 및 목적지와 비행경로상의 최신기상을 다음 기관등과 협조하여 파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측후소 (기상대)</li> <li>2. 중앙기상대의 예보 및 특보</li> <li>3. 군 또는 경찰의 기상통보망</li> <li>4. 비행중 당해지역의 항공 관제망</li> </ol> <p>제 11 조 (운항추적 및 통제) 항공기는 항공관제망, 소방지휘망 및 레이더통신망을 유지하여 운항안전을 도모하고 다음과 같이 운항추적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본부 지령실장은 이륙 이후 비행사항을 무전 추적한다.</li> </ol>						

<p>2. 조종사는 비행경로상 중요지점을 기점으로 비행위치를 수시 또는 최소 10분마다 소방본부 지령실 또는 당해 항공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의로 비행중 항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12조 (항공훈련) 항공요원의 기술 유지 향상을 위하여 대장·책임하에 지속적인 훈련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현직 조종사에 대한 기술향상 비행은 월간 2시간이상의 주간비행과 연간 4시간이상의 야간비행훈련을 하여야 하며 실제임무 비행으로 이를 충당할 수도 있다.</p> <p>2. 신입조종사는 비행경력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 비행과 5시간이상의 항공 소방활동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p> <p>3. 신입조종사는 소정의 훈련비행 완료 후 대장의 평가결과 합격하여야만 비행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p>	<p>제15조 (탑승자 준수사항등) ① 탑승자는 조종사 교시에 응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특수비행을 강요할수 없으며 이 규정의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대장 또는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탑승자에 대한 점문검색을 할 수 있다.</p> <p>③ 탑승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 (시험비행) 항공기의 중요정비 이후에는 시험비행을 수행하며, 시험비행전에 확인검사 및 지상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 (항공기보안) ① 항공기 보안을 위하여 대장은 다음사항을 조치한다.</p> <p>1. 계류된 항공기는 자물쇠를 장치하고 열쇠는 대장 또는 당직관이 보관 관리한다.</p> <p>2. 불순분자에 의한 피납이 기도되었을 때는 비행중에는 즉시 해당 항공관계 기관 및 항공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수단을 동원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 (비행계획서) ① 조종사는 세부 비행계획을 직접 작성하여 비행 30분전에 당해 항공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 제출된 비행계획서의 변경은 당해 항공관계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한 변경할수 없으며 탑승자는 임</p>	<p>② 조종사는 경비를 받을수 없는 곳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그 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p> <p>제17조 (항공기 정치장) 헬기장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준한 경비 및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제 18 조 ( 지상 안전수칙 ) ① 항공기의 지상 취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시동중 또는 회전중에는 타인의 접근금지
2. 항공기의 접근은 정면측방에서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방접근을 금지한다.
3. 탑승자에게로의 접근은 정비사 또는 항공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조종사는 헬기 회전날개가 완전 정지후 항공기를 이탈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지상유도를 실시할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는 정품으로 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유도는 손 신호에 의하며 필요시 무선통신 유도를 할수 있다.
4. 유도요원은 항공기 정면 우측 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이륙 및 착륙 단계에서는 사주 경계를 하며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 항공기의 정비 ) ① 대장은 연간 항공기 점검정비 계획을 매년 3 월 까지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정비는 자체정비, 공장정비, 재생정비로 구분 시행한다.

1. 자체정비 :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고 일상점검 정비를 시행한다.
  - 가. 일일점검 - 비행전 점검, 비행후 점검
  - 나. 정기점검 - 시간점검 ( 25시간, 100시간, 300시간 )
    - 날자점검 ( 기간점검이 도달하기전에 기술지시에 지정한 날자 )
  - 다. 수시점검 - 특별점검
    - 수령점검
    - 고장탐구 및 수리보고

2. 공장정비 : 자체 정비한계 및 능력을 초과하는 정비로 교통부가 인정하는 항공기 정비공장에 용역 정비

3. 재생정비 : 기체 및 엔진의 재생정비 ( 그바홀 ) 는 항공기 사용 비행시간 한계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 감항검사 ) 대장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1 회 감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장은 국가기능자격증 소지자로 검사자를 지정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감항검사를 실시한다.
2. 감항검사자는 검사결과를 대장을 경유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감합검사 결과 감합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합증명을 발급하고 감합증명서는 항공기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 항공기 사고 ) ①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소방본부 지령실에 통보한후 다음사항을 조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탑승자의 구조활동
2. 응급처치 및 인근병원에 후송 조치
3. 화재시 항공기 소화작업
4. 현장보존을 위한 경계제공 및 보안조치
5. 사고조사
6. 항공기 구난

②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명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기관의 전문요원을 사고조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 위원은 사고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 급유관리 ) 항공유는 저장으로부터 항공기에 급유시까지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수령저장시 품질검사 합격증 확인
2. 수령 및 급유시 전본채취 시각검사 실시
3. 급유차 장기보관 저장시 전본채취 시험의뢰
4. 급유전 급유차로부터 탈수 및 시각검사

제 23 조 ( 항공유의 소모계정 ) 유즈 500 더 헬리콥터의 경우 항공유의 소모기준은 시간당 106.0리터로 한다.

제 24 조 ( 항공기의 등록 ) ① 항공기를 취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재산대장에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형식
2. 항공기 제조자
3. 항공기 일련번호
4. 항공기 제작약호 및 기호
5. 기 타

③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등록증명서는 항공기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5 조 ( 물품관리 ) 항공기관리용 물품의 취득사용 및 보관 또는 처분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7 조 ( 위임규정 ) 이 규칙에 정하여진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3호 서식)		등·독·번·호
대 한 민 국 서 울 특 별 시  등 록 증 명 서		
1. 국적 및 등록번호	2. 항공기제조자 및 형식	3. 항공기 일련 번호
대 한 민 국	(주) 대 한 항 공	
4. 항공기 소유자	서울특별시장	
5. 항공기 소유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6. 상기 항공기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항공기 등록을 갈하였음을 증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 4호 서식)

감항증명서 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감항증명서

1. 국적 및 등록기호	2. 항공기 형식 및 제조자	3. 항공기 제조번호

4. 본 증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규정 (항공대 운영규정) 제 호 (년 월 일)에 의하여 교무하는 것으로서 상기의 항공기는 용도와 운용한계에 의하여 정비하고 이를 운용할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발행년월일

서울특별시 장

5. 감항 증명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0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 고시 제 232호(78.5.24) 및 제 207호(73.12)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등시행령 제 26조,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 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 건물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4.7.3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1 동 1564-2 ~ 신림 3 동 725-37  
번지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 신림 11 동 디성국교 대방변  
전소간 도로포장 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B = 8 m

L = 1,038 m

○ 아스콘포장 ( t = 40cm ) A = 33 a

○ 하수도 ( D = 300 - 600 mm )

L = 560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 관악구  
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준공 : 인가일로부터 84.12.31 한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 건물 )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

제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 : 별첨 ( 제재량

략 )

사업시행자명 : 관악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봉천동 1570-1

사업의 종류 : 디성국교 - 대방변전소  
간 도로포장공사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전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1	신림동 749-1	도	86	86		영등포구영등포동 425	김종현	
2	749-16	대	43	43		관악구신림동 587-60	서영섭	
						송구남창동 46-11	부국영호신영삼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3	신림동 749-8	도	36	36		영등포구영등포동 425	김종현	
4	" 749-5	"	43	43		"	"	
5	신림동산 122-17	임	1223	1223		서대문구홍은동 277-11	조천식	
6	신림동산 122-22	"		약 277		강남구반포동 35-23	(주)전영	
7	신림동 750-5	대	43	43		영등포구당산동 237-13	최성용	
8	" 751-1	도	130	130		관악구신림동 751-12	이형순	
9	" 753-15	대	4	4		" 753-2	이선웅	
						강남구서초동 58-3	제일생명 보험(주)	
10	" 753-16	"	38	38		성동구신당동 290-124	김재훈	
11	" 753-7	도	60	60		관악구신림동 10-82	최종태	
12	" 755-20	대	2	2		" 633-42	박선과	
13	" 730-5	"	20	20		" 82-20	박병배	
14	" 728-17	도	295	295		" 765-12	이종선	
15	" 724-54	전	73	73		관악구봉천동 1687-22	삼천리 건설(주)	
16	" 724-55	"	6	6		영등포구신길동 314-24	이경호	
17	" 724-56	"	8	8		서대문구남가좌동 293-29	이병택	
18	" 724-57	"	13	13		관악구신림동 596	강갑교	
19	" 724-58	전	11	11		"	"	
20	" 724-23	"	53	53		서대문구남가좌동 293-29	이병택	
21	" 724-24	"	17	17		"	"	
22	" 724-2	도	46	46		용산구이촌동 301-7	이우필	
23	" 724-1	"	138	138		영등포구대방동 200-8	문병국	
24	" 727-46	전	42	42		관악구신림동 599	강명석	
25	" 724-53	도	2	2		구로구구로동 120	차봉근	
26	" 724-48	"	46	46		관악구신림동 724-33	윤희중	
27	" 724-47	"	10	10		영등포구신길동 329-18	남영철	
28	" 724-46	전	245	7		"	"	
29	" 725-69	대	9	9		관악구신림동 725-15	조진취	
						동대문구계기 3동 227-2	계기 3동 새마을금고	

일련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30	신림동 725-63	도	9	9		관악구신림동 725-15	박홍수	
	"					관악구신림동 1678	이갑준	
31	" 725-65	대	3	3		인천시송의동 239	조규순	
32	" 725-66	"	8	8		관악구신림동 725-13	장무일	
						중구태평로 2가 250	삼성물산 (주)	
						중구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남북지점)	
33	" 721	대	3734	142		강남구청 담동산 2번지	한국전력 (주)	
34	" 706-84	도	66	약 46		"	"	
35	" 706-55	"	258	가분약 90(10/21)		"	"	
	"	"	258	" (11/21)		마포구합정동 376-10	김윤희	
36	" 706-118	대	25	25		관악구신림동 706-26	최영석	
37	" 706-119	"	17	17		성북구석관동 340-490	신인철	
38	" 706-24	도	15	15		관악구신림동 706-24	김영복	
39	" 706-119	전	5	5		동작구신대 방동 604	이의중	
40	" 706-117	대	49	49		관악구신림동 706-42	한상용	
41	" 725-67	도	31	31		관악구신림동 725-12	김창호	
						용산구한강로 2가 166-5	태평양화 작공업(주)	
42	" 725-72	"	7	7		관악구신림동 596	이진우	
43	" 725-73	"	7	7		관악구신림동 599	김성두	
44	" 725-68	"	35	35		" 725-38	장신태	
	"	"	35	35		" 614-20	남구개마 골금교	
45	" 725-64	"	6	6		" 725-38	곽국남	
46	" 745-17	대	16	16		도봉구수유동 26-1-16	송준환	
계			46 필지	3,292㎡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2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시행변경  
허가(준공기한연기)

- 1. 서고시 제 547호(83.10.20)로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시행허가된 동대문구 장안동 462번지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허가(준공기한연기)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장안동 462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장안동시장 신축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토지 : 3,297.10평방미터  
건물 : 건축 면적 - 1,643.32평방미터  
연건축면적 - 11,833.73평방미터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8-5

태신개발(주)  
대표기승동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84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일 : 85년 7월 31일  
(당초 84.7.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변경사항 없음)
- 사.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변경사항 없음)
- 아. 설계도서 : 생략(변경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3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고속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고속철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센터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7. 31

서울특별시장

○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지하도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	비 고
기정	지하도로	종로 6가 289-3 앞도로	폭 : 24.2 m 연 장 : 41 m 면 적 : 1,371.5 통 로 : 705.1 상 가 : 498.7 부대시설 : 167.7	
변경	"	"	폭 : 24.2 m 연 장 : 44 m 면 적 : 2,028.07 통 로 : 995.75 상 가 : 354.87 부대시설 : 177.45	통 로 : 290.65㎡(증) 상 가 : 356.17㎡(증) 부대시설 : 9.75㎡(증)
· 고속철도(정차장)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	비 고
당초	고속철도(종로6가정차장)	종로6가 64 일대	5,600	
변경	"	"	5,834.5	234.5㎡(증)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b>서울특별시 고시 제 444 호</b></p> <p>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p> <p>1. 서울시고시 제 158 호(83.3.19)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경희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p>		<p>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동대문구청 도시생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가. 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 84.7.31 변경 : 86.1.31</p>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

1984. 7. 31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6호(82.5.14) 및 동고시 제 192호(83.4.4)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성명

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4. 7. 31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신정동 733 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및명칭 : 운암고등학교  
다. 사업의규모 : 대지 22,582㎡  
건물연면적 6,359.20㎡  
라. 사업시행자주소 : 강서구신정동 산 117-3  
및성명 : 학교법인운암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바. 허가도서 : 별첨(도면생략)  
사. 토지조서 : 별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관명세	비고
					관	제 안 주소 성명		
강서구 신정동	산 117-3	임	11,852	11,333		학교법인 운암학원		매입
	733	답	5,729	4,473		"		"
"	733-3	"	2,547	2,547	양재동 9-66	정금순		리매입
"	733-4	"	1,867	1,710	독산동 1007	김정길		"
"	733-28	대	211	211	역삼동 690-21	안창준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관	제인주소성명		
강서구 신정동	732	답	5,243	111	연남동 272-4 연세 아파트 바 302	김성주		미매 입
"	734-1	"	403	403	동자동 12-31	정금순		"
"	734-2	전	368	248	"	"		"
"	산 115-14	임	97,199	1,546	신월동 228	원관희		"
					화곡동 372-3	사공락		"
					구로동 466-5	이정훈		"
					대 구시남구대명동 470-8	김종만		"
					신월동 42	원상희		"
					등촌동 196-2	백영희		"
					별 침			
					화곡동 362-73	최영섭		"
					별 침			
계			125,419	22,582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78.4.3) 및 동고시 제 232 호(78.5.2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동고시 제 351 호(79.7.12) 및 동공고 제 374 호(80.12.11)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및 일부준공된 미립중 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을 변경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7. 31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57-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  
미립중여자고등학교(기존학교)

다. 사업시행규모								
구분	단	초 (㎡)	변	경 (㎡)	비	고 (㎡)		
대지면적		29,291.6		29,291.6				
건축면적		2,436.36		5,280.45		(승) 2,844.09		
연면적		9,915.37		18,763.3		(승) 8,847.93		

  

<p>라. 시행자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학교법인 삼문학원 이사장 조성갑</p> <p>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p> <p>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 개월이내</p> <p>2) 준공예정년월일 - 1985.12.30</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복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생략)</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7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2호(84.7.24)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리과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8.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면장 (m)	기	점	총	합	비	고
기정	대로	2	18	28-44	3100	원호 1가		마포신수동		일부구간	
변경	대로	2	18	28-44	3100	원호 1가				폭원 축소	

\* 따로 붙임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b>◎서울특별시 고시 제 448 호</b></p> <p><b>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b></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2 호 (84.7.23)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p> <p>○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조서</p>	<p>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8.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장</p>
--	---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설	소매시장	용산구 한강로 2 가 191 번지의 2 필지	13244.2㎡	총 건축물 [ 지하 4 층, 지상 28 층, 건축면적 ( 105,529.01㎡ ) 내 지하 1 층, 건축면적 9066.42㎡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b>◎서울특별시 고시 제 449 호</b></p> <p><b>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b></p> <p>1. 건설부 고시 제 145 호 (78.6.15) 로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409 호 (84.7.10) 로 실시계획공람 공고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7. 3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장</p>	<p>가. 사업시행자 : 서울시종로구청 동 90-1788 번지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해화동 90-178 간 도로확장공사</p> <p>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폭 = 40 연장 = 220 아스팔트포장 = 31</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p> <p>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 84.11.22</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설명 : 별항</p>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전입 면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의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혜화동 90-16	대	246.7	246.7		공산구동상1동 309-16	이연희 3	
2	166-5	"	125.6	125.6		용산구우암동 123-16	이철희	
3	172-1	"	23.1	23.1		종로구혜화동 172-1	구영희	
4	172-2	"	27.8	27.8		" 172-2	김정자	
5	173	"	214.9	214.9		강남구서초동 34 삼호 9동 406호	임상진	
6	174-1	"	99.2	99.2		종로구효제동 105-2	김덕신	
7	175-1	"	171.9	171.9		영등포구목동 361-110	이태우외 4	
8	177	"	132.2	132.3		종로구혜화동 177	황경식	
9	178-3	"	169.5	169.5		반포한양 1동 707호	허경준	
10	190-2	"	44.4	44.4		종로구혜화동 180	이창희	
11	181-3	"	46.7	46.7		영등포구목동 361-110	이태우외 4	
12	181-2	"	36.3	36.3		"	"	
13	181-1	"	35.0	35.0		"	"	
14	183-1	"	2.0	2.0		종로구혜화동 183	박종화	
15	182-6	"	41.4	41.4		영등포구영등포동 3가 148	(주)경방	
16	182-7	"	36.4	36.4		명륜동 4가 162-3	장수걸	
17	166-1	"	70.9	70.9		종로구혜화동 166-1	김희연	
18	90-17	학	714.9	714.9		중구명동 1가	전주교 유지재단	
계			2,238.9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 의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종로혜화동 166-5, 90-10	건물	세멘부록 조와즙	277.0		종로구혜화동 166-5	이연희	
2	" 172-1	"	무조와즙	1층 23.14		종로구혜화동 172-1	구영희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 의종류 및 내용
						관계인	주소성명	
3	해화동172-1	건물	목조와즙	2층	19.83	종로구해화동 172-1	구영희	
	172-2	"	"		13.88	도봉구수유동 270-29	김정자	
4	173	"	"		83.31	마포구성산동 210-10	임성운	
	"	"	"		14.88	"	"	
5	174-1	"	"		31.93	성북구성북동 116-1	최찬식	
6	175-1	"	"	1층		영등포구목동 361-110	이태우	
	"	"	"		128.93	"	외 4인	
	"	"	"	2층		"	"	
	"	"	"		46.28	"	"	
7	177	"	"		60.33	종로구해화동 177	황경서	
8	178-1	"	"		61.4	봉면리 459-1	홍문표	
9	180	"	연와조 와즙	1층		종로구해화동 180	이창희	
	"	"	"	2층		"	"	
	"	"	"		5.0	"	"	
	"	"	"	지하		"	"	
	"	"	"		5.0	"	"	
10	181-1	"	목조와즙		17.45	종로구해화동 181-1	이종민	
11	181-2	"	"		17.45	영등포구목동 361-110	이태우외 4	
12	181-2,3,4	"	"		22.28	"	"	
	"	"	연와조 와즙	1층		"	"	
	"	"	"		1.0	"	"	
	"	"	"	2층		"	"	
	"	"	"		1.0	"	"	
	"	"	목조와즙		16.53	"	"	
13	182-2	"	"		17.1	종로구명륜4가 162-3	장수길	
14	182-4	"	"		26.4	영등포구영등포동3가 148	경방(주)	
15	166-1	"	철골연와 조 단즙	1층		종로구해화동 166-1	정희연	
	"	"	"		69.42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의 내용
						관계인	주소성명	
15	혜화동166-1	건물	철골연와 조 단층	2 층 69.42		종로구혜화동 166-1	정희연	
16	90-17	"	목조와급	50.0		중구명동1가	천주교 유지재단	
계				1,135.85				

○서울특별시고시제 450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82.2.3) 및 동고시제 434 호(82.10.26) 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봉구하계동산 16-6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을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4.8.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하계 동산 16-6 일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대진고등학교 신설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 28,096 ㎡
- 2) 건물면적 : 건축면적 3,851.07 ㎡  
현면적 14,377.97 ㎡  
교사 1 동 (지하 1 층,  
지상 5 층)  
체육관 1 동, 창고 2 동,  
수위실 1 동.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곡동 143-1

학교법인 대진학원 이사장 경석규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4.8 ~ 1987.3.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자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의 주소, 성명 : 별첨.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도봉구하계동 산 61-6	임	17,355 중 15,291	동서문 4 가 247  묵정동 31-8  묵정동 31-8	박 금 식  장 윤 회  강 현 식	5370 분지 1074 4296 분지 2148 4296 분지 2148
2	도봉구하계동 산 16-50	임	303	명륜 2 가 167  홍제동 332-186 홍제동 332-12 " " " 미아동 8-389	조 독 봉 김 옥 인 최 병 고 조 순 옥 최 명 곡 최 정 수 최 병 선 최 한 숙	2 분지 1 (공유자지분) 25 분지 6 " 25 분지 4 " " 25 분지 1
3	도봉구하계동 53-1	답	1,625 중 1,625	종로 5 가 44-3	김 인	
4	도봉구하계동 55	답	2,403 중 2,403	"	"	
5	도봉구하계동 56-1	"	3,947 중 3,947	하왕십리동 58 미아동 48-2	최 영 자 임 회 경	1194 분지 300 1194 분지 894
6	도봉구하계동 57-1	전	1,144 중 1,144	하계동 66 " 175 " 66 " 31 " 209 " 70 " 74	이 중 석 이 창 기 이 경 원 " 이 도 원 이 정 원 이 중 남	공유자지분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하계동 34 " 66 " 66	이 준 원 이 문 원 이 영 원	
7	도봉구하계동 58-1	답	1,461 중 1,461	하계동 66 하계동 175 하계동 66 하계동 31 하계동 209 하계동 70 하계동 74 하계동 34 하계동 66 하계동 66	이 중 식 이 창 기 이 경 원 이 경 원 이 도 원 이 정 원 이 준 남 이 준 원 이 준 원 이 영 원	공유자지분
8	도봉구하계동 55-4	도	898 중 898		서울특별시	
9	도봉구하계동 64-5	전	629 중 629		"	
10	도봉구하계동 64-6	"	564 중 395		"	
계	10 필지		30,329 중	28,096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지 적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도봉구하계동	산 16-6	임	17,355 중 15,291	없 음	
2		산 16-50	"	303	"	
3		53-1	답	1,625 중 1,625	"	
4		55	"	2,403 중 2,403	"	
5		56-1	"	3,947 중 3,947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권리명세
6	도봉구하계동	57-1	전	1,144 중 1,144	없 음
7		58-1	답	1,461 중 1,461	
8		55-4	도	898 중 898	
9		64-5	전	629 중 629	
10		64-6	"	564 중 395	
계			10 필지	30,329 중 28,096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2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동대문구 이문동 324 의 18호의 19 필지 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하여 공람 공고한다.
2.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 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하며 본 사업시 행에 따른 의견서(이의)는 공람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람.  
 가. 공람기간: 동대문구청 토목과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84.7.31 ~ 84.8.13

1984.7.31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지: 동대문구이문동 324의 30 ~ 334 의 23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경희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폭 8미터, 연장 153 미터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동대문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84.12.31 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경희고등학교진입로 (이문동 324 의 30-334 의 23 간) 보상구간

공사구간		총경수		수용경수		비고					
이문동 324 의 30 -334 의 23		대지 16 필지 497 ㎡	도로 2 필지 438.6 ㎡	대지 16 필지 497 ㎡	도로 1 ㎡ 6.6 ㎡	전 3 필지 539 ㎡	계 1,474.6 ㎡	전 3 ㎡ 539 ㎡	계 1,042.6 ㎡	건물 5 동 지상 60 ㎡	건물 5 동 지상 60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 의존 내용	비고		
						관계인	주소 성명				
1	이문동 324-18	전	446	446	도로	망우동 433-11	이진영				
2	" 333-9	전	92	92	도로 대지	이문동 330	박순길				
3	" 333-11	대	5	5	도로	" 333-7	황경자				
4	" 333-13	전	1	1	대지	" 330	박순길				
5	" 334-70	도	6.6	6.6	대지	" 334-1	이창렬				
6	" 346-190	대	3	3	도로	" 346-138	이창성		346-169 이서분합		
7	" 334-79	"	53	53	도로	이문동 333-8	이경소				
8	" 334-80	"	40	40	대지	" 334-81	이찬순				
9	" 334-83	"	40	40	대지	" 87-11	남순학				
10	" 334-84	"	40	40	도로	이문동 334-90	사상원	중구남대분로 2가9-1 국민은행채권회고액 사당동지점 2,100만원			
11	" 334-85	"	43	43	대지	이문동 334-85	송저명	중구남대분로 2가9-1 국민은행채권회고액 장위동지점 7백만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 외 의 종 류 및 내 용	비 고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2	이문동334-99	대	50	50	도로	이문동 334-76 중구태평로 1가61-1	김 준 진 한국주 은 행	채권최고액 15백만원	
					대 지	이문동 334-76 은병구구산동206-6	김 선 회 전 창 해	7백만원	
13	" 334-110	"	8	8	대 지	이문동 334-60	위 정 기		334-60 에서분할
14	" 334-111	"	23	23	대 지	" 334-61	박 명 수		334-61 에서분할
15	" 334-112	"	41	41	대 지	" 346-78	전 순 회		334-16 에서분할
16	" 334-113	"	28	28	대 지	목동 170-39	이 진 숙		334-13 에서분할
17	" 334-123	"	30	30	대 지	이문동 334-17 중구소공동 76	홍 성 회 한일은행 화곡동지점	근저당설정 8백만원	334-17 에서분할
18	" 334-124	"	16	16	대 지	청량리 동 205-576	제 정 환		334-57 에서분할
19	" 334-125	"	41	41	대 지	이문동 334-20	김 진 균		334-20 에서분할
20	" 334-126	"	36	36	대 지	이문동 334-23	유 정 진		334-23 에서분할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 외 의 종 류 및 내 용
			수 량 (㎡)	수 량 (㎡)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이문동 334-16	주택	흙벽돌조 와 층평가	22	주택	이문동 334-16 중구남창동 46-11	전 순 회 부국상호 신흥금고	근저당설정 1천1백만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종류및내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2	이문동 334-20	주택	세멘벽돌 조와즙	6㎡	주택	이문동 334-20	김진복	
3	" 334-57	"	목조와즙	13㎡	"	청량리동 205-576	강정조	
4	" 334-61	"	세멘브록조 세멘와즙	14㎡	"	이문동 334-61	박명수	
5	" 334-13	"	흙벽돌조 와즙평가전	5㎡	"	이문동 334-13	박순길	

○서울특별시공고제 45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86 호 ( 62.12 20 ) 호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동대문구 전농 4 동 212-20의 10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한다.
  2. 토지 ( 건물 )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 가.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84.7.31-84.8.13  
( 14 일간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공 고

1.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전농 4 동 213-34-582-27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농 4 동 582 주변 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8 미터연장 84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동대문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4.12.31 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생략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59 호

무교구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43 호 ( 78.5.26 )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무교구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4. 7. 30

서울특별시장

다음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1 일대
2. 사업의 명칭 : 무교지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인가 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 243 호 ( 78.5.26 )
4. 시행자 주소, 성명 : 종로구 세종로 202 번지 박용석
5. 준공 면적  
가. 토지  
  - 대지 : 983 ㎡
  - 도로 : 336.5 ㎡
  - 계 : 1,319.5 ㎡
 나. 건물  
  - 건축면적 : 390.22 ㎡ ( 38.94 % )

- 연면적 : 7,766.85 ㎡ ( 501 % )
  - 층 수 : 지상 13 층, 지하 4 층
  - 용 도 :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6. 준공내역 : 준공내역조서 및 확정측량 성과도 참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460 호

다동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28 호 ( 81.12.3 )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다동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4. 7. 30

서울특별시장

다음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9 번지 일대
2. 사업의 명칭 : 다동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인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 428 호 ( 81.12.3 )
4. 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강남구 신사동 339 번지  
성명 : 롯데건설(주) 대표 이 상 순

5. 준공 면적

가. 토 지

- 대 지 : 2,881.2 ㎡
  - 도 로 : 1,001.1 ㎡
  - 공 원 : 488.9 ㎡
- 계 4,371.2 ㎡

나. 건 물

- 건축면적 : 1,121.9 ㎡  
( 38.67 % )
- 연 면 적 : 26,631.62 ㎡  
( 637.67 % )
- 층 수 : 지상 17층, 지하 4층
- 용 도 : 업무시설및관내시설

6. 준공내역 : 준공내역서 및 확정측량성과도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 461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완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451 호 ( 81.12.24 ) 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 허가되고 동고시 제 405 호 ( 82.10.6 ) 및 동고시 제 42 호 ( 84.1.23 ) 로 허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동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4. 7. 31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광장동 산 62-3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장로회 신학대학교 시설 확충
- 3) 사업의 규모
  - ① 사업시행면적 53,610 ㎡
  - ② 건축 면적 - 1,685.67 ㎡
  - 연 면 적 - 6,426.74 ㎡
  - 동 수 - 1 동
  - 층 수 - 지하 2 층, 지상 5 층, 옥탑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용 도 - 교 사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성동구 광장동 353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박 조 준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 81. 12. 24  
준 공 : 84. 7. 30
- 6)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 별첨생략
- 7) 준공도면 : 별첨 생략
- 8) 기타 의문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 445-8705 ) 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463 호**  
**KS 표시 허가취소처분 공고**

취소하였기 등 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84. 8. 1  
 서울특별시장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를  
 가. 허가취소 내역

업체명	소재지	대표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칭	종류, 등급
(주) 부산파이프 서울공장	서울구로 개봉 180 -15	이운형	제 788 호	KSC 8401	강 계 전선판	후강 (용융아연도금) 16PC-104BC
취소일자	취 소 사 유					
84.7.28	자 진 반 납					

**○서울특별시공고제 465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대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4 호 ( 84. 4. 30 ) 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국철과 창동차량기지와의 연결선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대시설 : 인입선) 시행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

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4. 8. 4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지  
 가. 위치  
 도봉구 상계동 816-20 일대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도봉구 창동 167-3 일대 (경원선 : 쌍용양회전용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지하철 3,4호선 건설공사  
 나. 명칭 : 지하철 4호선 부대시설 (반입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 규모  
 가. 시행면적 : 2,191.6㎡  
 나. 시행규모  
 B = 7 ~ 9m L = 260m  
 (교량 = 140m)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51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재명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준공년월일 : 84.12.31

6. 사업계획 평면도 : 별첨(생략)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재지지번,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9.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대표전화 593-892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466 호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다음 업체는 건설업법 제 38조 제 1항 제 18호 및 국세징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1984. 8. 1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유	근거 법규	취소 일자
설비 (서울 12-53)	(주)보원공영	조인행	중구을지로 5가 273-1	국세 체납	건설업법 제 38-1-18호 및 국세징수법 제 7조	84.8.3

**구 청 공 고**

**◎성북구공고제 241 호**

축척변경사업 확정공고

1. 동소문동 2가 지구 및 5가 지

- 1. 사업명 : 축척 변경 사업
- 2. 확정내역

구 축척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 55조 규정에 의거 축척변경사업이 완료되었기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한다.

1984. 7. 30

성 북 구 청 장

지 구 명	토 지 소 재	축척	필지수	면 적	비 고
동소문동 2가 지구	성북구동소문동 2가 8번지의 210필	1/600	211	16,227	확정결과 면적 증감이 없어 청산사항 공고 생략
동소문동 5가 지구	성북구동소문동 5가 15번지의 49필	1/600	50	2,242	
계			261	18,469	

\* 확정공고와 동시 지적공부 시행

**◎성동구공고제 243 호**

축척변경사업의 확정공고

성동구중곡 재 1 지구 축척변경 사업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축척변경 사업이 완료되어 관계도서를 성동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7. 30

성 동 구 청 장

- 1. 사업명 : 구획정리 재척지 축척 변경
- 2. 토지의 소재 및 지구명 : 중곡동 150-2번지 일대
- 3. 축 척 : 1/600 (종전 1/1200)
- 4. 필지수 : 61 필
- 5. 총면적 : 15,050
- 6. 확정조서 : 별 첨
- 7. 공고기간 : 84.7.30 - 84.8.9 (10일간)

첨부 : 확정조서 및 지적도

사 령

◎ 1984 년 8 월 1 일 자

령제 303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무 서	직 급
최 광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동작구 근무를 명함	전남해남군송지면	지방행정주사

령제 304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무 서	직 급
김 동 우 차 천 녹	내 무 국 감사담당관 감사 4 계장	감사담당관 감사 4 계장 환경순찰계장	지방행정사무관

◎ 1984 년 7 월 30 일 자

령제 305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무 서	직 급
김 광 수	울지연습 '84 합동계획통제부 요원 (84.7.30-84.8.31)	민방위국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일 식 간	울지연습 '84 합동계획통제부 요원을 해제함.	종로구 사적동	지방행정주사

◎ 1984 년 7 월 30 일 자

령제 307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무 서	직 급
노 균 복	복직을 명함. 권악구 근무를 명함.	구 로 구	지방지적기원보

◎ 1984 년 8 월 4 일 자

령제 308 호

성 명	발 명 무 서	현 무 서	직 급
이 명 의 최 성 원	감사원 피견 (84.8.1-8.31) " (84.8.1-10.31)	종합건설본부 감사담당관	지방토목기사 지방행정주사보

◎ 1984년 8월 4일자			명제 309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안계웅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통신기사	
◎ 1984년 8월 6일자			명제 310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이미화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아동상담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소속	직명	성명	훈련과정	훈련기관
내무국	지방건축기과	김경수	대형공사기법	텍사스 에이엠대학 (미국)
<p>파견기간: 1984.8.6 - 1986.5.28 (22개월)</p>				
<p>서울특별시</p>				